



<b>산업안전보건법</b> [시행 2020. 5. 26] [법률 제17326호, 2020. 5. 26, 타법개정]	<b>산업안전보건법</b> [시행 2020. 6. 9] [법률 제17433호, 2020. 6. 9, 일부개정]
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① (생략)	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업주는 근로자(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72조(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)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(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) 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(이하 "산업안전보건관리비"라 한다)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	제72조(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)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·관리하는 자(건 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)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(이하 "산 업안전보건관리비"라 한다)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 비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 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	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	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 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.

	•
제16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16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ol> <li>제42조제4항 후단, 제53조제3항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55조제1항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자</li> </ol>	2. 제42조제4항 후단, 제53조제3항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55조제1항(제166 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· 제2항 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 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제175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	제175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mark>제125조제1항</mark> 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	6. 제125조제1항 · 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
7.8. (생 략)	7.·8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